

2022년 3월 1일 인사부터 시행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유·초등교원인사관리기준



전 라 북 도 김 제 교 육 지 원 청

목 차

제1장(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3조(방침)	1
제2장(신규임용)	2
제4조(신규임용교사의 배치)	2
제5조(원로교사의 배치)	2
제3장(관내전보)	2
제6조(기본대상)	2
제7조(서열부 작성)	2
제8조(전보내신 시기)	3
제9조(장기근속자의 순환전보 및 유보)	3
제10조(일반전보)	3
제11조(체육특기교사 전보)	4
제12조(특수교사의 전보)	4
제13조(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전보)	5
제14조(보건교사 전보)	5
제15조(사서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5
제16조(복직교사 배치)	5
제17조(전보의 특례)	5
제18조(근무여건 개선 전보)	5
제4장(감축전보)	6
제19조(정원조정으로 인한 관외전보)	6
부 칙	7
<별표1>교원(교감,교사) 전보서열부작성 평정기준	9
<별표2>연구(시범·실험)학교 일람표	15
<별표3>김제시 학교소재 급지 일람표	17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로 교원의 직무의식을 고양하여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교원, 공립초등교원, 특수(치료)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인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8.28.>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김제교육지원청 관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립유치원 원감, 유치원교사, 초등학교 교감, 초등교사 및 특수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적용한다. (영양교사는 별도 인사관리기준을 적용함)<개정 2020.8.28.>

제3조 방침

초등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방침을 적용한다.

1. 교육공무원 인사관리는 인사관계 제 법규 및 전라북도 인사관리 기준에 의 한다.
2. 교육경력이 많거나 교육실적이 우수한 자는 우대하여 근무의욕을 높인다.
3. 가급적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지를 참작하여 생활 안정을 기한다.
4. 장기근속으로 인한 침체성을 배제하여 학교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5. 도규모 이상의 연구(시범, 실험)학교 및 소년체전 시 대표팀 육성 학교 교원 조직을 보강한다.
6. 전입이 경합되는 경우는 모든 학교를 서열에 의하여 전입하고 이를 공개하여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정립한다.
7. 부부교원 및 직계 준비속은 동일교에 배치하지 않는다.

제2장 신규임용

제4조 신규임용교사의 배치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로서 김제교육지원청에 배정된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는 다음 원칙에 의하여 배치한다.

1. 관내에서 전입 희망자가 없는 학교에 우선 배치한다.
2. 신규교사는 본인의 희망과 생활근거지 및 학교의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3. 남녀교사 비율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4. 신규교사 비율이 단위학교 교사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학기 중 신규 임용할 경우 또는 교원 수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1.6.>

제5조 원로교사의 배치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원로교사(교장 임기 만료 후 교사 임용 대상자)의 근무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교사의 희망과 생활 근거지를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3장 관내 전보

제6조 기본대상

교(원)감과 교사의 관내 전보 기본대상은 동일교 2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한다.
<개정 2017.8.21.>

제7조 서열부 작성

교(원)감과 교사의 전보서열부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1. “별표1”의 관내 전보 서열부작성 평정 기준에 의하여 경력점, 학교 급지별 가산점, 우대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여 전보한다.<개정 2017.8.21.>
2. 장기근속자, 단기근속자의 서열부를 별도 작성하며, 장기근속자의 서열이 단기근속자의 서열에 우선한다. <신설 2014.11.24.><개정 2019.8.19.>
3. 전보서열 평정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동일교 근무 경력이 많은 자, 교육 경력이 많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한다.<개정 2017.8.21.>

4. 폐교, 분교 격하, 정원변동으로 과원 정리상 부득이 전보할 경우에는 장기근속자의 전보서열부에 포함하여 전보한다.<신설 2019.8.19.>

제8조 전보내신 시기

1. 교(원)감은 매년 3월 1일 내신에 의하여 전보서열을 정하고 서열 후보자가 없을 경우 추가 내신할 수 있다.
단, 교(원)감은 당해 시·군 서열 명부 등재자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9월 1일자로 전보 내신할 수 있다.
2. 교사는 매년 3월 1일자로만 전보내신을 받아 서열명부 등재자 순에 의해 전보하고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타시군 전입자와 신규교사를 배치 하되, 9월 1일자는 타시군 전입자와 신규교사를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9조 장기근속자의 순환전보 및 유보

1. 동일교 5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보 배치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2회에 한하여 유보할 수 있다.
 - ① 정년퇴임 2년 미만인 자
 - ② 삭제<개정 2018.8.17.>
 - ③ 타시·도 전보 서열부에 등재된 자 중 해당 학년도에 전출이 예상되는 자
 - ④ 삭제<개정 2017.8.21.>
 - ⑤ 예능 단체종목을 지도하여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1등급 이상 수상한 교사
 - ⑥ 도규모 이상의 연구(시범, 실험) 학교의 연구부장(담당자)
 - ⑦ 삭제<개정 2017.8.21.>
3. 체육 특기교사는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5년간 전보유예 할 수 있다.<개정 2017.8.21.>
4.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사를 교원 정원의 10% 이내에서 1년 동안 전보유예 요청할 수 있으나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혁신학교 만기근무자는 2년 이내에서 전보유예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8.2.5.>

제10조 일반전보

1. 동일교 2년 이상 근속한 자로 동일교 5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5희망 이상,

5년 미만 단기근속자는 1~3희망을 받아 전보서열부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전보한다. 단, 장기근속자의 서열부를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7.8.21.>, <개정 2018.8.17.><개정 2019.8.19.>

2. 학교장의 단위학교 책임경영 역할 제고를 위하여 교사를 초빙 또는 공모를 실시 할 수 있다.

단, 전라북도 초빙교사 임용업무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제11조 체육특기교사 전보

1. 체육특기 교사로 유보된 교사가 해당년도에 뚜렷한 실적이 없을 시는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 배치할 수 있다.
2. 체육특기 교사의 인정 범위
 - ① 본도 체육특기교사 명부에 등재된 자
 - ② 최근 5년 이내에 직접 지도한 학생(개인, 단체)이 도규모 이상 대회에서 1위(금상)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수정 2011.1.5.>
 - ③ 본 교육지원청 대표팀 육성책임자로 본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제12조 특수교사의 전보

1. 특수학급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특수교사로 임용된 자를 우선 전보(배치)한다.<신설 2016.6.30.>
2.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배치한다.
3. 특수교육 자격증 소지자는 필요에 따라 별도 서열부를 작성하여 전보할 수 있다.
 - 가. 서열부는 관내 전보 전에 작성한다.
 - 1) 1순위 : 특수교육 담당 경력이 없는 교사
 - 2) 2순위 : 특수교육담당 경력이 적은 교사 중에서
 - 가) 교육경력이 적은 교사
 - 나) 생년월일이 늦은 교사 순으로 배치한다.
 - 나. 본인의 희망에 관계없이 전보된 교사는 전보 전후 학교의 근무기간을 합산하되 동일교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최근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수정 2014.11.24.>

제13조 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전보

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배치는 학급수용 기초 자료에 의거 단일학급 원 아수가 많은 유치원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6.>,<개정 2021.8.25.>

제14조 보건교사 전보

1. 보건교사의 배치는 학급수용 기초 자료에 의거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수정 2014.11.24.>
2. 1항에 의거하여 전보된 경우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동일교 근무 기간 내에는 전보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15조 사서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개정 2020.8.28.>

1. 사서교사는 도서관이 종합학습공간으로 조성된 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2. 사서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는 학급수용 기초 자료에 의거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2.5.><개정 2020.8.28.>

제16조 복직교사 배치

복직자는 휴직 전 근무교 발령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4.11.24.>

제17조 전보의 특례

1. 폐교, 분교 격하, 정원변동으로 과원 정리상 부득이 전보할 경우에는 장기근 속자의 전보서열부에 포함하여 전보한다.<개정 2019.8.19.>
2. 폐교, 학급감축, 정원감축(과원조정 포함)등의 사유로 부득이 전보된 자는 전보 전후 학교의 근무기간을 합산하되 동일교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최근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수정 2014.11.24.>
3. 김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발명교육센터의 교사로 2년 이상 근무 한 자가 관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4.11.24.>,<개정 2018.2.5.>, <개정 2021.8.25.>

제18조 근무여건 개선 전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동일직위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 할 수 있다. 단, 제4호 ~ 제6호는 전라북도 김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6호는 본인의 희망을 존중하여 전보한다.

<개정 2014. 1. 6.>

1. 당해연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감사 결과 인사조치가 지시된 자
3.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4. 지역사회에서 특정 교육공무원을 기피하거나 불화가 있어 근무조건 개선이 필요한 자
5. 현임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6.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 또는 침해당할 것이 우려되는 교원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

제4장 감축 전보

제19조 정원 조정으로 인한 관외 전보 <신설 2021.8.25.>

폐교(원), 학급감축, 정원감축(과원조정 포함) 등의 정원조정으로 인해 부득이 관외 전보해야 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① 희망자
- ② 관내 교(원)감 · 교사 근무경력이 많은자
- ③ 복직, 복귀자
- ④ 정원감축대상학교 교원

경합시 교육총경력이 많은자, 교(원)장·감 자격취득일이 빠른자 순으로 한다

부 칙

1. 본 인사관리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제반 인사관리 기준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2004.1.30 수정)
2. 본 요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요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요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요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요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요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요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요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요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요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요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요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요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요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요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요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본 요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6.)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4. 라. 교원기능장 가산점은 2016학년도 학년말 인사 때 까지만 적용한다.

부 칙(2014. 11. 24.)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8. 30.)

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전라북도 유·초등교원 인사관리 기준에 따른다.

부 칙(2017.06.30.)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8.17.)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8.19.)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9.8.19. 개정된 **별표1**의 2. 학교 급지별 가산점, 4. 우대가산점의 차. 농어촌지역학교 비지정학교 근무 가산점, **별표 3의 2. 김제시학교소재급지일람표**는 2023년 3월 1일 근무 경력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8.28.)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21년 3월 1일자 인사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0.8.28. 개정된 **별표1의 4. 우대가산점, 카. 영어전보가산점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자 인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8.25.)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22년 3월 1일자 인사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교원(교감, 교사) 전보서열부 작성 평정기준

1. 경력점

- 가. 경력평정 기간은 그 평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의 동일교 근속년수로 하되 1, 2기로 나누어 1기는 최근 3년간, 2기는 1기 전 2년간으로 한다.
- 1) 1기는 1년에 2점씩 가산한다.
 - 2) 2기는 1년에 1점씩 가산한다.

2. 학교 급지별 가산점 (동일교 최근 5년)

지역별	1	2	3	4	5
1년간 가산점	1.0	1.25	1.5	1.75	2.0

◦ 학교 급지별 가산점(동일교 최근 5년, 2023.3.1. 근무경력부터 적용)<개정 2019.8.19.>

급지	1	2	3	4
1년간 가산점	1.25	1.5	1.75	2.0

3. 삭제<개정 2017.8.21.>

4. 우대 가산점

- 가. 포상 (근무 시군이나 수상시기 제한 없음, 최고 훈격 1회분에 한함. 단 교감은 동일직 위 최근 10년) (수정 2011.1.5.), <개정 2017.8.21.><개정 2018.2.5.>

훈격별	훈장, 포장, 대통령,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장관 모범교원상 (교육감)	교육감 총(학)장	교육장
가산점	3.0	2.5	2.0	1.5	1.0

- 1) 시 · 군 단위 이상 기관장의 효행상(표창) 수상자는 (가)항의 포상 훈격별 평정점에 10%를 가산한 점수를 부여한다.
- 2) 교육장 표창은 동일교 근속기간 중에 수상한 1회분에 한하여 별도 가산 한다. <개정 2017.8.21.>
- 3) 김제교육대상 수상자는 동일교 근속기간에 수상한 것에 한하여 1점을 가산한다.<개정 2018.8.17.>

나. 연구실적(2.5점 만점) (동일교 최근 5년)

등급 규모	1등급	2등급	3등급
전국규모	2	1.5	1
도규모	1	0.5	0.25

※ 1년에 1종목 입상분만 인정, 공동연구일 경우 점수 1/n만 인정 <개정 2018.8.17.>

다.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2.5점 만점)(동일교 최근 5년)<개정 2019.8.19.>

구분	교육부 지정	도 지정	시 · 군 지정
1년 가산점	0.5	0.4	0.25

라. 삭제 <개정 2017.8.21.>

마. 복식학급 담임교사 가산점 (2.5점 만점), (동일교 최근 5년)

1년에 0.5점 가산<개정 2017.8.21.>

바. 교감 학급담임 가산점 (3점 만점), (동일교 최근5년)

1년에 1점 가산

사. 특수학급담임 및 통합학급담임 가산점 (2.5점 만점), (동일교 최근 5년)

1년에 0.5점 가산 <개정 2017.8.21.>

아. 삭제 <개정 2018.8.17.>

자. 소년체육대회 종목 지도 교사 가산점 (5점 만점), (동일교 최근 5년간)

등급	1위	2위	3위
전국규모	2	1.5	1
도규모	1	.	.

※ 1년에 1종목 (최고입상분만 인정)

차. 농어촌지역학교 비지정학교 근무 가산점

1) 초등·특수·사서교사

- 1년에 0.5점씩 가산 <신설 2014.11.24.>, <개정 2017.8.21.>
(동일교 최근 5년, 2.5점 만점, 2015.3.1. 재직교원부터 적용)

- 1년에 0.25점씩가산<신설 2014.11.24.>, <개정 2017.8.21.>, <개정 2019.8.19.>
(동일교 최근 5년, 1.25점 만점, 2023.3.1. 근무경력부터 적용)

2) 보건교사

- 1년에 1점씩 가산 <신설 2014.11.24.>, <개정 2017.8.21.>
(동일교 최근 5년, 5점 만점, 2015.3.1. 재직교원부터 적용)

- 1년에 0.5점씩가산<신설 2014.11.24.>, <개정 2017.8.21.>, <개정 2019.8.19.>
(동일교 최근 5년, 2.5점 만점, 2023.3.1. 근무경력부터 적용)

3) 유치원교사

- 1년에 1점씩 가산
(동일교 최근 5년, 5점 만점)

- 1년에 0.5점씩 가산 <개정 2019.8.19.>
(동일교 최근 5년, 2.5점 만점, 2023.3.1. 근무경력부터 적용)

※ 대상 초등학교: 김제초등학교, 김제검산초등학교, 김제동초등학교, 김제중앙초등학교

※ 대상 유치원: 김제제일유치원(2015.3.1. 재직교원부터 적용)<개정 2017.8.21.>

김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김제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2019.3.1. 재직 교원부터 적용)<개정 2018.8.17.>

카. 영어 전보가산점(동일교 최근 5년)

점수	Teps		600이상	677이상	800이상	(pbt)paper based total (cbt) computer based total
	Toeic		700이상	815이상	875이상	
	Toefl	pbt	540이상	580이상	600이상	
		cbt	207이상	237이상	250이상	
가산점		0.50	1.00	1.50		

※ 영어기능장을 위 자격으로 획득하였다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유리한 것 하나만 사용

카. 영어 전보가산점(동일교 최근 5년)<개정 2020.8.28.>

(※2022.3.1.자 인사부터 적용)

TEPS 점수	TOEIC 점수	TOEFL 점수			전보 가산점
		PBT	CBT	IBT	
915 이상	960 이상	630 이상	283 이상	116 이상	1.50
872 이상	930 이상	620 이상	273 이상	111 이상	1.25
793 이상	875 이상	601 이상	257 이상	103 이상	1.00
710 이상	815 이상	580 이상	240 이상	95 이상	0.75
572 이상	700 이상	540 이상	217 이상	82 이상	0.50
508 이상	635 이상	517 이상	193 이상	70 이상	0.25

※ 영어기능장을 위 자격으로 획득하였다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유리한 것 하나만 사용

※ 중복사용 불가

카. 영어 전보가산점(동일교 최근 5년)<개정 2021.8.25.>

(※2023.3.1.자 인사부터 적용)

New TEPS 점수	TOEIC 점수	TOEFL 점수 (IBT)	전보 가산점
502 이상	930 이상	111 이상	0.75
392 이상	815 이상	95 이상	0.50
273 이상	635 이상	70 이상	0.25

※ 영어기능장과 중복사용 불가

타. 유치원교사 동화구연대회가산점(최고입상분 1회만 가산), (동일교 최근 5년)

등급		1	2	3	비고
가산점	도대회	2.0	1.5	1.0	
	시대회	1.0	0.75	0.5	

파. 장애인 부양 가산점 <개정 2019.8.19.>, <개정 2021.8.25.>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점 부여
 - 장애인 교원 < 2023.3.1.자 인사부터 적용>
 - 장애인 배우자를 1년 이상 부양하는 교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장애인 직계존비속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교원
(직계존비속은 1대에 한함)

하. 단설유치원 근무 가산점 (5점 만점), (동일교 최근 5년)

1년에 1점씩 가산

※ 대상학교 : 김제제일유치원

거. 삭제 <개정 2017.8.21.>

너. 다자녀 양육 교원 가산점 <개정 2021.8.25.>

- 삭제<개정 2019.8.19.>
- 삭제<개정 2019.8.19.>
- 3자녀 이상 양육 교원 1점 <개정 2019.8.19.>
- 2자녀 양육 교원 0.5점<2023. 3. 1.자 인사부터 적용>

더. 1학년, 6학년 담임교사 가산점(동일교 최근 5년)

- 1년에 0.5점 (6학년 담임교사는 2011. 3. 1.부터 적용 <개정 2014. 1. 6.>, 1학년 담임교사는 2019.3.1.부터 적용) <개정 2018.8.17.>, <개정 2021.8.25.>

더.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사 가산점

- 1년에 1점 (2013. 3. 1. 근무자부터 적용) <신설 2014. 1. 6.>

더. 발명교육센터 근무교사 가산점

- 1년에 1점(2018.3.1. 근무자부터 적용)<신설 2018. 2. 5.>

5. 산출방법

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함

나. 월 점수는 다음 가산점 연점수별 월 점수를 적용한다. 단, 분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는 경우에는 1년 가산점으로 계산한다.<개정 2021.8.25.>

연 점수	월 점수	연 점수	월 점수	연 점수	월 점수
0.25	0.021	0.75	0.0625	1.5	0.125
0.4	0.033	1.0	0.084	1.75	0.146
0.5	0.042	1.25	0.105	2.0	0.167

6. 전보 서열부 작성

- ① 전보 서열부는 별표1의 전보서열부 평정기준에 의하여 관내 전보 희망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개정 2020.8.28.>
- ② 서열부는 남·여별로 작성하여 남·여별 비율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수정 2014.11.24.>

7. 동점자 처리<개정 2017.8.21.>

- ① 동일교 근무경력이 많은 자
- ② 교육경력이 많은 자
- ③ 생년월일이 빠른 자

<별표2>

연구(시범·실험)학교 일람표

1. 교과부 지정

순	학 교 명	지 정 영 역	연 구 기 간		비 고
			시작년도	종료년도	
1	만 경	사회복지사활용	04. 5. 1	05. 4. 30	
			05. 5. 1	06. 4. 30	재지정
2	죽 산	영어	06. 9. 1	08. 8. 31	
		융합인재교육(STEAM)	12. 3. 1	13. 2. 28	
3	부 용	양성평등	12. 3. 1	13. 2. 28	

2. 도 지정

순	학 교 명	지 정 영 역	연 구 기 간		비 고
			시작년도	종료년도	
1	광 활	교원능력개발평가	09. 9. 1	10. 2. 28	2009.9지정
		교육과정(통합교육과정)	06. 3. 1	08. 2. 29	
2	금 구	교원능력개발평가	09. 9. 1	10. 2. 28	2009.9지정
		발명교육	10. 3. 1	12. 2. 29	
3	금 남	교원능력개발평가	09. 9. 1	10. 2. 28	2009.9지정
4	김 제	독서교육	04. 3. 1	06. 2. 28	
		주5일 수업제	07. 3. 1	09. 2. 28	
5	김 제 동	영화교육	05. 3. 1	07. 2. 28	
		방과후학교	08. 3. 1	10. 2. 28	2008 지정
6	김제중앙	교육과정편성·운영	04. 3. 1	06. 2. 28	
		방과후학교	08. 3. 1	09. 2. 28	2008 지정
		방과후학교	09. 3. 1	10. 2. 28	2009 지정
7	김제검산	국어	03. 3. 1	05. 2. 28	
		현장적합성검토	12. 3. 1	14. 2. 28	
		2015개정교육과정	16. 3. 1	18. 2. 28	
8	난 산	방과후학교(체육교육)	06. 3. 1	08. 2. 29	
		녹색성장	10. 3. 1	12. 2. 29	
9	만 경	교과교육(영어)	09. 3. 1	11. 2. 28	2009지정
10	백 구	특수교육(특수교육)	04. 3. 1	06. 2. 28	
		교원능력개발평가	09. 3. 1	10. 2. 28	
11	백 석	소규모-공동교육과정	10. 3. 1	12. 2. 29	
12	백 량	교원능력개발평가	09. 3. 1	10. 2. 28	
		평생교육	10. 3. 1	12. 2. 29	
13	봉 남	국악교육	05. 3. 1	07. 2. 28	
14	부 용	교실수업개선 (영어)	05. 3. 1	07. 2. 28	
		교실수업개선(영어)	07. 3. 1	08. 2. 29	후속연구
		교과교육(영어)	09. 3. 1	11. 2. 28	2009지정

순	학 교 명	지 정 영 역	연 구 기 간		비 고
			시작년도	종료년도	
15	비 륭	사이버 가정학습	05. 3. 1	07. 2. 28	
		방 과 후 학 교	07. 3. 1	08. 2. 29	1년간
		교원능력개발평가	09. 3. 1	10. 2. 28	
		YP	10. 3. 1	12. 2. 29	
16	성 덕	교원능력개발평가	09. 9. 1	10. 2. 28	2009.9지정
		독서토론	10. 3. 1	12. 2. 29	
17	심 창	교원능력개발평가	09. 3. 1	10. 2. 28	
18	용 동	교원능력개발평가	10. 3. 1	11. 2. 28	
19	용 지	흡연예방	01. 4.13	04. 2. 29	
		인성교육	05. 3. 1	07. 2. 28	
		수월성교육	08. 3. 1	10. 2. 28	2008 지정
		사교육 없는 학교	10. 3. 1	11. 2. 28	
		교육과정SW	15. 3. 1	17. 2. 28	
20	원 평	NEIS 사범	02.11. 1	04. 2. 29	
		유아교육(안전교육)	03. 3. 1	05. 2. 28	병설유치원
		평생교육	05. 3. 1	07. 2. 28	
		평생교육	07. 3. 1	08. 2. 29	후속연구
		교원능력개발평가	09. 9. 1	10. 2. 28	2009.9지정
21	월 성	다문화교육	15. 3. 1	17. 2. 28	
22	월 촌	YP	06. 3. 1	08. 2. 29	
		교원능력개발평가	09. 3. 1	10. 2. 28	
		호국보훈	10. 3. 1	12. 2. 29	
23	종 정	창의성 교육	05. 4. 1	07. 2. 28	
		창의성 교육	07. 3. 1	09. 2. 28	2007 지정
		소규모-공동교육과정	10. 3. 1	12. 2. 29	
24	죽 산	방과후학교	10. 3. 1	11. 2. 28	
25	진 봉	저학년 방과후학교	06. 3. 1	08. 2. 29	
		원격 화상 수업	10. 3. 1	12. 2. 29	
26	청 하	방 과 후 학 교	07. 3. 1	08. 2. 29	2007 지정
27	초 처	방 과 후 학 교	07. 3. 1	08. 2. 29	
		디지털 교과서	09. 3. 1	11. 2. 28	
28	치 문	1,2학년 교과서	08. 3. 1	09. 2. 28	2008 지정
		3,4학년 교과서	09. 3. 1	10. 2. 28	
29	황 강	교원능력개발평가	09. 3. 1	10. 2. 28	
		소규모-공동교육과정	10. 3. 1	12. 2. 29	
30	황 산	교원능력개발평가	09. 3. 1	10. 2. 28	
		교원능력개발평가	10. 3. 1	11. 2. 28	
31	김제제일유치원	다문화교육	10. 3. 1	12. 2. 29	단설유치원
		교육실습	16. 3. 1	17. 2. 28	

<별표3> 김제시 학교소재 급지 일람표

1. 김제시 학교소재 급지 일람표

순	학교명	급지	조정급지	조정시기	재조정 급지	조정시기
1	공덕	3	4	91년3월1일		
2	광활	4	5	03년3월1일		
3	금구	2				
4	금남	3	4	85년3월1일		
5	금산	4				
6	김제	1	2	12년9월1일		
7	김제검산	2	1	12년9월1일		
7	김제동	1	2	91년3월1일		
8	김제북	3	4	06년3월1일		
9	김제중앙	1				
10	난산	2	3	06년3월1일		
11	남양	3	4	91년3월1일		
12	남포	4				
13	대성	4				
14	대촌	4				
15	도강	4				
16	만경	2	3	03년3월1일		
17	백구	2	3	06년3월1일		
18	백석	3	4	10년3월1일		
19	벽량	3	4	91년3월1일		
20	벽제	3				
21	봉남	3				
22	부용	3	4	91년3월1일		
23	비룡	5				
24	석교	4				
25	성덕	4	5	91년3월1일		
26	성동	3	4	91년3월1일		
27	수월	4	5	91년3월1일		
28	심창	4	5	95년3월1일		
29	용동	4				
30	용암	4				
31	용지	3				
32	원평	2				
33	월산	4				
34	월성	4				
35	월촌	3	4	91년3월1일		
36	장흥	4	5	91년3월1일		
37	종정	3	4	91년3월1일	5	95년3월1일
38	죽산	2	3	91년3월1일		
39	진봉	3	4	85년3월1일	5	03년3월1일
40	청운	3	4	06년3월1일		
41	청하	4	5	91년3월1일		
42	청하북	3				
43	초처	4				
44	치문	2	4	06년3월1일		
45	화율	5				
46	황강	3	4	06년3월1일		
47	황산	2	3	91년3월1일		
48	희남분교	4				
49	제일유치원	1		99년3월1일	2	10년3월1일

2. 김제시 학교소재 급지 일람표(2023.3.1. 근무경력부터 적용)<개정 2019.8.19.>

순	학교명	급지	급지 (지정일)	급지 (지정일)	비고
1	공 덕	2			
2	광 활	4			
3	금 구	1			
4	금 남	4			
5	금 산	4			
6	김 제	3			
7	김제검산	3			
8	김 제 동	3			
9	김 제 북	2			
10	김제중앙	3			
11	난 산	1			
12	남 양	2			
13	만 경	3			
14	백 구	1			
15	백 석	2			
16	벽 량	4			
17	봉 남	1			
18	부 용	4			
19	비 룡	2			
20	성 덕	3			
21	심 창	4			
22	용 동	1			
23	용 지	1			
24	원 평	2			
25	월 성	2			
26	월 촌	3			
27	종 정	3			
28	죽 산	2			
29	진 봉	4			
30	청 운	1			
31	청 하	4			
32	초 처	1			
33	치 문	3			
34	화 율	4			
35	황 강	3			
36	황 산	1			
37	제일유치원	3			

2022년 3월 1일 인사부터 시행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유·초등교원인사관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2021.8.25.

조항	조명	현 행	개정안																																													
제3장 관내전 보	제13조 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전보	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배치는 학급수용 기초 자료에 의거 원당 원아수가 많은 유치원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6.>	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배치는 학급수용 기초 자료에 의거 단일학급 원아수가 많은 유치원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6.>,<개정 2021.8.25.>																																													
제3장 관내전 보	제17조 전보의 특례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발명교육센터의 교사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관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4.11.24.>,<개정 2018.2.5.>	김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발명교육센터의 교사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관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4.11.24.>,<개정 2018.2.5.>,<개정 2021.8.25.>																																													
제4장 감축 전보	제19조 정원조정 으로 인한 관외 전보	신설	<p>제19조 정원 조정으로 인한 관외 전보 <신설 2021.8.25.></p> <p>폐교(원), 학급감축, 정원감축(과원조정 포함) 등의 정원조정으로 인해 부득이 관외 전보해야 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희망자 ② 관내 교(원)감 · 교사 근무경력이 많은자 ③ 복직, 복귀자 ④ 정원감축대상학교 교원 <p>경합시 교육총경력이 많은자, 교(원)장·감자격취득일이 빠른자 순으로 한다</p>																																													
별표1 4. 우대 가산점	카.영어 전보 가산점	(동일교 최근 5년) (※2022.3.1.자 인사부터 적용)	<p>(동일교 최근 5년) <개정 2021.8.25.> (※ 2023.3.1.자 인사부터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TEPS 점수</th> <th rowspan="2">TOEIC 점수</th> <th colspan="3">TOEFL 점수</th> <th rowspan="2">전보 가산점</th> </tr> <tr> <th>PBT</th> <th>CBT</th> <th>IBT</th> </tr> </thead> <tbody> <tr> <td>915 이상</td> <td>960 이상</td> <td>630 이상</td> <td>283 이상</td> <td>116 이상</td> <td>1.50</td> </tr> <tr> <td>872 이상</td> <td>930 이상</td> <td>620 이상</td> <td>273 이상</td> <td>111 이상</td> <td>1.25</td> </tr> <tr> <td>793 이상</td> <td>875 이상</td> <td>601 이상</td> <td>257 이상</td> <td>103 이상</td> <td>1.00</td> </tr> <tr> <td>710 이상</td> <td>815 이상</td> <td>580 이상</td> <td>240 이상</td> <td>95 이상</td> <td>0.75</td> </tr> <tr> <td>572 이상</td> <td>700 이상</td> <td>540 이상</td> <td>217 이상</td> <td>82 이상</td> <td>0.50</td> </tr> <tr> <td>508 이상</td> <td>635 이상</td> <td>517 이상</td> <td>193 이상</td> <td>70 이상</td> <td>0.25</td> </tr> </tbody> </table> <p>※ 영어기능장을 위 자격으로 획득하였다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유리한 것 하나만 사용 ※ 중복사용 불가</p>	TEPS 점수	TOEIC 점수	TOEFL 점수			전보 가산점	PBT	CBT	IBT	915 이상	960 이상	630 이상	283 이상	116 이상	1.50	872 이상	930 이상	620 이상	273 이상	111 이상	1.25	793 이상	875 이상	601 이상	257 이상	103 이상	1.00	710 이상	815 이상	580 이상	240 이상	95 이상	0.75	572 이상	700 이상	540 이상	217 이상	82 이상	0.50	508 이상	635 이상	517 이상	193 이상	70 이상	0.25
TEPS 점수	TOEIC 점수	TOEFL 점수				전보 가산점																																										
		PBT	CBT	IBT																																												
915 이상	960 이상	630 이상	283 이상	116 이상	1.50																																											
872 이상	930 이상	620 이상	273 이상	111 이상	1.25																																											
793 이상	875 이상	601 이상	257 이상	103 이상	1.00																																											
710 이상	815 이상	580 이상	240 이상	95 이상	0.75																																											
572 이상	700 이상	540 이상	217 이상	82 이상	0.50																																											
508 이상	635 이상	517 이상	193 이상	70 이상	0.25																																											

조항	조명	현 행	개정안
별표1 4. 우대 가산점	파. 장애인 부양 가산점	장애인 배우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직계존비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1년 이상 부양한 교원에게 1점 가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대에 한함) <개정 2019.8.19. >	<개정 2019.8.19.>,<개정 2021.8.2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점 부여 - 장애인 교원<2023.3.1.자 인사부터 적용> - 장애인 배우자를 1년 이상 부양하는 교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장애인 직계존비속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교원(직계존비속은 1대에 한함)
별표1 4. 우대 가산점	녀. 3자녀 이상 다자녀 양육 교원 가산점	3자녀 이상 다자녀 양육 교원 가산점 (1.0점 가산) <개정 2019.8.19.>	다자녀 양육 교원 가산점<개정 2021.8.25.> ◦ 3자녀 이상 양육 교원 1점 <개정 2019.8.19.> ◦ 2자녀 양육 교원 0.5점 <2023.3.1.자 인사부터 적용>
별표1 4. 우대 가산점	더. 1학년, 6학년 담임교사 가산점	1년에 0.5점 (6학년 담임교사는 2011.3.1.부터 적용 <개정 2014.1.6.>, 1학년 담임교사는 2019.3.1.부터 적용) <개정 2018.8.17.>	(동일교 최근 5년) 1년에 0.5점 (6학년 담임교사는 2011.3.1.부터 적용 <개정 2014.1.6.>, 1학년 담임교사는 2019.3.1.부터 적용) <개정 2018.8.17.> <개정 2021.8.25.>
별표1 4. 우대 가산점	5. 산출 방법	나. 월 점수는 1년당 점수의 12분의1로 계산하여 월수를 곱한 후 소수 둘째 자리까지 계산(셋째자리 버림). (예, 월점수=1년점수×1/12×월수 한 후 소수 2자리 까지만 계산)	나. 월 점수는 다음 가산점 연점수별 월 점수를 적용한다. 단, 분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는 경우에는 1년 가산점으로 계산한다.<개정 2021.8.25.>
부칙		신설	부칙(2021.8.25.)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22년 3월 1일자 인사부터 시행한다.